

영화7번방의 선물로 알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‘진술보조인’ 제도

약, 1,300만명의 역대 6위 관객수를 보유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을 기억하시나요?

7살 때 예승이를 둔 6살 지능의 아빠 용구, 그는 억울한 죄명을 쓰고도 딸에 대한 협박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해 버리고 말았는데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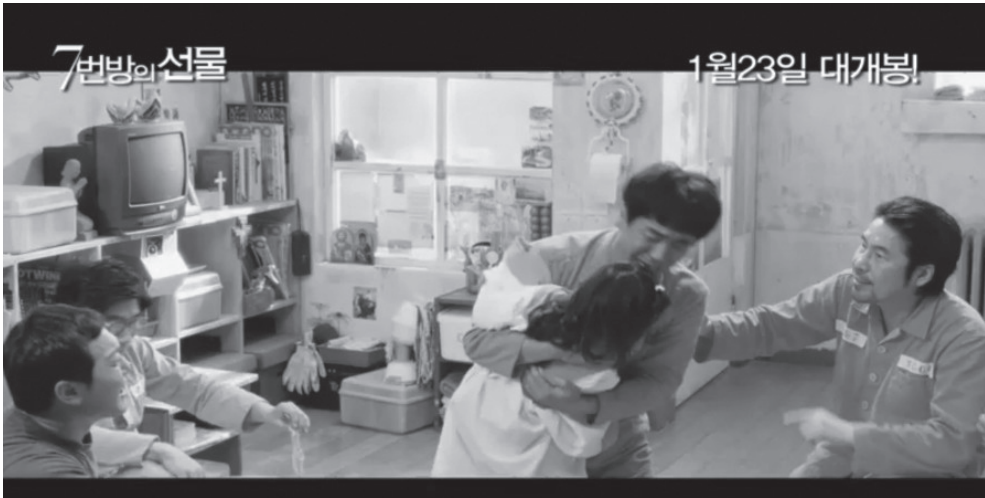
용구처럼 장애가 있어서, 혹은 나이가 많아서, 질병이 있어서 재판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면?

사회적 약자들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

실제로 사회적 약자가 소송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신적·육체적인 제약으로 진술이 어려운 경우,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‘진술보조인 제도’가 2017년 2월 4일에 신설되었습니다.

민사소송법 제143조의2(진술 보조)

- ① 질병, 장애, 연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- ②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보조인의 자격 및 소송상 지위와 역할, 법원의 허가 요건·절차 등 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진술보조인이란 당사자와의 관계가 밀접한 사람으로 당사자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그 밖에 동거인이 이에 해당합니다. 가족이 아니더라도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진술보조인 제도는 2016년 2월 3일, 개정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가 공포된 후 1년 만에 시행되었습니다. 다만, 진술보조인 제도는 7번방의 선물과 같은 형사재판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민사소송법에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.

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고, 동시에 법원과 상대방의 진술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증개하거나 설명할 수 있습니다.



다만, 진술보조인은 당사자의 진술을 조력하는 사람일 뿐이므로 당사자를 대신해 출석하여 진술하거나, 출석한 당사자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에 관한 진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.



신청절차는 소 제기 시나 소 계속 중 조력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급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진술보조인의 인적사항 및 그 자격,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
법원은 진술보조 허가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초로 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, 해당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언제든지 진술보조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.



‘진술보조인 제도’를 통하여 노인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복지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